



제11장

축산물 및 농장 인증제도

- 윤충근 (농협중앙회) 010-5374-4910
yck5030@hanmail.net
- 이원복 (등급판정소) 011-795-5502
leewbok@hanmail.net

I. 서론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나 미국, 일본의 장관출혈성 대장균(E. coli O-157H:7) 식중독 사건 발생, 벨기에에서의 동물용 사료에 다이옥신(Dioxin) 오염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 세계 각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동물과 관련된 질병 및 위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윤, 2007).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 발생한 사람의 신종 전염병 중 75%가 동물과 관련이 있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사건과 웰빙 열풍 등으로 인해 식품 선택기준이 영양성분보다는 위생 안전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과학적, 법률적 근거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어,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하에 걱정과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웰빙)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소망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소비자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생산자)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도덕성, 윤리경영, 사회적 기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장에 대해서도 생산하는 축산물의 위생수준은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 냄새 없는 축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표 1 및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인증제와 함께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로하스 기업을 표방하면서 친환경·안전농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품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표-1〉 국내 각종 인증 제도

구분	관련법률	인증기준	인증기관	유효기간
친환경축산물인증 - 무항생제축산물 -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및제9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단체	2년
HACCP적용농장지정	축산물가공처리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3년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령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1년



인증기관명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명
유기축산물



HACCP적용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그림 1〉 각종 축산물 및 농장 인증 마크

Ⅱ. 친환경축산물 인증

1. 목적 및 필요성

축산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일반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증산 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인증절차

2.1. 신청서류 및 수수료

- ① 신청서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② 인증품생산계획서 : 시설 및 사육현황, 유기·무항생제사료 확보방안, 축사구조, 초지·사료포 토양관리계획, 입식및번식방법, 월별생산계획량, 사육장주변 여건(지적도, 약도),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안,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대책, 수질 및 유해잔류물질 분석자료, 출하계획-운송방법, 도축·가공장현황, 생산품판매방법
- ③ 인증품취급계획서 : 판매 계획량(톤/천개/kg), 월별 판매시기, 시설 및 작업 개요 원료 구매방안, 생산물 판매계획, 생산물의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 계획, 인증품의 포장단위 변경 및 혼합단순처리 후 재포장 내역 등.
- ④ 수수료 : 50,000원 및 심사원 출장비, 인증기관 운영실비, 각종 검사비용

2.2. 신청서 제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출장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인증기관

2.3. 심사절차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 편성 및 심사 ⇒ 심사 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2.4. 생산·출하과정 조사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 ① 조사 항목 :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재배관리 상황, 재배포장 환경, 농약 잔류, 수확시기, 수확후 관리 상황, 가공관리, 출하과정
- ②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 경미한 부적합 -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
시정·보완 곤란 - 과태료, 벌금, 고발 등

2.5. 시판품조사

- ①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서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이해관계자가 조사 요청한 인증품
- ②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 표시여부,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 ③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인증표지 말소, 부적격 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3. 인증시 혜택

- (1)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원 자격 획득(HACCP인증 필수)

4. 인증기준

4.1. 유기축산물

구분	인증시 평가 사항
일반원칙	목초지, 유기사료 확보능력, 동물복지, 수의사 처방, 사양관리 기록
사육장 및 사육조건	축사조건 - 동물복지, 축사 청결, 방목조건-방목지 및 운동장 확보
자급사료기반	목초 및 사료 재배지, 유기사료 생산기준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전염병 비감염소,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수정란이식, 유전공학기법 불허) 유기축산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구입
전환기간	유기사료 급여 12개월 이상(송아지 식육-6개월)
사료 및 영양관리	100% 유기사료 급여(2010 말까지 85%까지 허용) 급여불가 사료(유전자변형 농산물, 포유동물 유래 사료, 대사촉진제,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음용수 수질 - 지하수 중 생활용수에 적합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축종의 적정성, 사육장 위생관리, 예방접종, 기생충구제, 휴약기간 2배 준수, 거세가능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수송 시 전기자극이나 안정제 사용금지, HACCP 적용도축장에서 도축, HACCP 적용 가공장에서 가공, 동물약품 허용기준의 1/10 이하 잔류, 포장지는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 사용
가축분뇨의 처리	부숙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 운동장 분뇨 외부 유출 방지

4.2. 무항생제 축산물

구분	인증시 평가 사항
경영관리	1년 이상 사양(구입, 사양, 질병관리, 출하 등) 및 경영관련 자료
축사 및 사육조건	축사조건-동물복지, 축사 청결, 사육조건-무항생제사료 급여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허용, 무항생제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구입
전환기간	무항생제사료 급여 12개월 이상(송아지 식육-6개월)
사료 및 영양관리	전 기간 무항생제사료 급여, 급여불가 사료(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포유동물 유래 사료), 음용수 수질 - 지하수 중 생활용수에 적합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축종의 적정성, 사육장 위생관리, 예방접종, 기생충구제, 휴약기간 2배 준수, 거세가능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수송 시 상처나 고통 최소화, HACCP 적용도축장에서 도축, HACCP 적용 가공장에서 가공, 동물약품 허용기준의 1/10 이하 잔류, 포장지는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 사용
가축분뇨의 처리	부숙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 운동장 분뇨 외부 유출 방지

Ⅲ. HACCP 적용농장 인증

1. 목적 및 필요성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은 해썹, 해썹 등으로 발음하고,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Farm to Table)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의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포장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위생관리가 시작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관리하는 HACCP 제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가장 우수한 제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이 식품의 위생관리제도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사육단계에 HACCP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가축의 의미가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식용동물(Food animal)로 의미가 바뀌고, 둘째는 원료의 생산단계인 사육농장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는 소해면상뇌증,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등과 같은 위해요소는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넷째는 가공업체에서 살모넬라나 대장균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축사육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 공인된 위생관리 제도 중 HACCP제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섯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식품위생관리의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증절차

2.1. 신청서류 및 수수료

- ① 신청서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 ② 축산업등록증사본, 농업인 HACCP 교육훈련증 사본, 최근 3개월간 생산 실적,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 운용실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 운용 실적
- ③ 수수료 : 200,000원+심사원 출장비

2.2. HACCP 교육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전화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http://www.meatacademy.co.kr	031-659-3673
농식품부 농업연수원	http://www.ali.go.kr	031-299-0022
대한수의사회	http://www.kvma.or.kr	031-702-868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ttp://www.ihaccp.or.kr	031-465-6677(114)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ri.re.kr	031-780-91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02-2194-7316
(사)대한양돈협회	http://www.koreapork.or.kr	02-581-9751
한경대 축산위생교육원	http://grrc.hankyong.ac.kr	031-670-5432

2.3. 신청서 제출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본원 및 지원

2.4. 심사절차(처리기간 60일)

인증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서류미비시 15일 내 보완 ⇒ 심사계획 통보 ⇒ 현장실사 ⇒ 평가 및 판정 ⇒ 미비시 3개월 이내 보완 ⇒ 적합시 지정서 교부

2.5. 유효기간 연장 심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연장 심사 신청

- ① 구비서류 : 신청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6서식)
축산업등록증사본, HACCP 정기교육 훈련증 사본
- ② 신청시기 : 지정기준일 30일 전까지
- ③ 심사절차(처리기간 60일) : 신청서 접수 ⇒ 심사계획통보 ⇒ 현장실사 ⇒ 미비시 일정기한
이내 보완 ⇒ 심사결과 통보 ⇒ 부적합시 시정명령 ⇒ 2회 이상 불이행시 지정취소
- ④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3년마다 재심사)

3. 인증시 혜택

- (1)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시 필수
- (2)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시 가점 부여
- (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시 선결 조건

4. HACCP 인증기준(실시상황평가표)

항목	평가내용
차단방역관리	1. 차단방역관리기준서 2. 차단시설 및 경고문 3. 방명록 4. 소독실시 기록부 5. 방문자용 방역복, 장화 6. 외부인 출입 통제 7. 울타리 설치
농장시설관리	1. 시설관리 기준서 2. 출입문, 차량소독장치, 주차장, 물품반입창고, 우사 등 시설 3. 농장배수 4. 사육단계별 구분관리 5. 사육밀도 6. 분변제거 장비 및 시설 7. 음수 및 사료 급여 시설 8. 환기시설 9. 분뇨처리장
농장위생관리	1. 농장위생관리 기준서 2. 도구 및 신발 청결 상태 3. 발판소독조 4. 주사침관리 5. 폐사축 관리 6. 우사 내 분뇨처리 상태 7. 구서, 구충 8. 관리인 위생 및 방역 교육 9. 사육단계별 관리기준서 10. 살모넬라 검사 성적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	1. 사료, 동물약품, 음수관리 기준서 2. HACCP인증 배합사료 급여 여부 3. 사료입고관리 4. 사료보관 장소 청결 상태 5.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사료 운반도구 청결 상태 6. 출하예정소 무항생제 사료 30일 이상 급여 여부 7. 자가제조 사료 관리기준서 8. 휴약기간 준수여부 9. 동물약품 입출고관리 및 빈용기 처리 10. 수질검사 기록(1년 1회 이상, 지하수 중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 11. 음수조 및 급수라인 청결 상태 및 소독 관리
질병관리	1. 질병관리기준서 2. 환축격리시설 3. 예방접종 및 임상관찰 기록 4. 정기적인 수의사 관리여부 5. 내외부 기생충 구제 6.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진 내역
반입 및 출하관리	1. 반입 및 출하관리 기준서 2. 개체기록카드 3. 도입우 구입 전 관리 기록 4. 도입우 격리 시설 및 관리 기록 5. 출하일지 및 등급판정결과 기록 6. 출하소 체표면 청결 상태
종합판정	각 항목을 ○×로 평가×판정이 5개 이하-수정보완, 6개부터-부적합
HACCP 관리	1. HACCP팀 구성 2. 출하소 특성(품종)과 취급방법 3. 가족설명서 작성 여부 4. 농장평면도 및 사양관리 절차도 5. 위해분석 6. 위해요소별 조치방법 7. CCP의 적절성 8. 한계기준 적절성 9.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 10. 모니터링 기록 11. 개선조치 방법 및 기록 12. 검증기록 13. HACCP 플랜 기록 14. HACCP 플랜 교육훈련 15. HACCP 관리 기준서
종합평가	① 각항별 10점으로 판정 ② 9점 이상 ○, 7점 이상 △, 7점 미만 × ③ 총 점수 150점 중 128점 이상은 적합(×판정항이 있거나 △판정이 5개항 이상 있을 경우 부적합)

Ⅳ.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1. 목적 및 필요성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토양환원을 통한 자원 순환을 촉진시키고, 축산농장 주변과 경관을 조화시키므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농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 농장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가축관리에 있어서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 조사료포 의무면적 확보, 축사 간 일정거리 유지(5m 이상), 축사 내 가스 및 먼지 제거장치 설치,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등 준수하여야 하며 둘째,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설치, 가축분뇨처리장 및 운동장에 유출 방지턱 설치, 가축분뇨 퇴비장 등 분뇨처리시설 지붕 설치, 축사·운동장에 가축분뇨 유출방지용 깔짚(톱밥 등) 사용,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셋째, 가축 분뇨의 자원순환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토양 환원을 위한 적절한 퇴·액비 살포 면적 확보, 시비처방서 발급받은 후 살포, 시·군 단위 퇴·액비 조직체 참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기준 등이 필요하고 넷째, 축산농장 주변과 경관 조화를 위한 조경수·잔디 등 식재, 분뇨 처리시설의 주변과 환경조화·청결 유지, 농장 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섯째, 축산농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뇨처리 처리실태 기록·유지, 질병 및 위생 관리 기록, 소독실시 상황 등 기록·유지,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정절차

2.1. 신청서류 및 수수료

- ① 신청서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② ㉠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㉔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③ 수수료 : 없음

2.2. 신청서 제출기관

시·군 축산담당 부서

2.3. 심사절차(처리기간 50일)

인증신청서 접수(시·군) ⇒ 농식품부지정기관(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자연순환팀) ⇒ 서류 심사(5일 이내) ⇒ 농식품부보고 ⇒ 미비시 15일 내 보완 ⇒ 심사계획 통보 ⇒ 현장실사 ⇒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 개최 ⇒ 지정여부 결정(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80점 이상) ⇒ 지정서 교부 및 조건부여

2.4. 사후심사

인증을 받은 농가를 1년 1회 심사

- ① 지정기준 준수 여부 현장실사
- ② 미 이행 시 시정 또는 지정 취소

3. 지정시 혜택

- (1)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 가능(직불금 20% 추가 지급)
- (2)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지원
- (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V.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1. 목적 및 필요성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해 보조금 지급허용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 지급절차

2.1. 신청서류 및 수수료

- ① 신청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별지제1호서식
- ② 축산업등록증 사본, HACCP적용농장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 ③ 수수료 : 없음

2.2. 신청서 제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

2.3. 심사절차(처리기간 120일)

인증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농관원 → 농식품부, 관련기관, 사업대상자) ⇒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농관원 → 농식품부) ⇒ 1차 실적자료(전년 11.1~

당해년 4.30)확인(농관원) ⇒ 1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및 소요예산액 신청(농관원 → 농식품부) ⇒ 1차보조금 지급(농관원 → 사업대상자) ⇒ 2차 실적자료 (당해년 5.1~10.30)확인(농관원) ⇒ 2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및 소요 예산액 신청(농관원 → 농식품부) ⇒ 2차보조금 지급(농관원 → 사업대상자)

2.4.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①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직불금 신청 사항, 지급 적정성, 사업대상자의 프로그램 이행실태 등 추진상황점검, 인증기관의 업무 추진실태 등
- ②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단계별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판매실적을 확인
- ③ 신청 및 친환경 인증 상황의 이행실태,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2.5. 부적합 판정시 처리

- ①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②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③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3. 지급단가 및 지급한도

3.1. 지급단가

- ① 한우-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② 육우-한우의 50% 감액 지급

3.2.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연간

단,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②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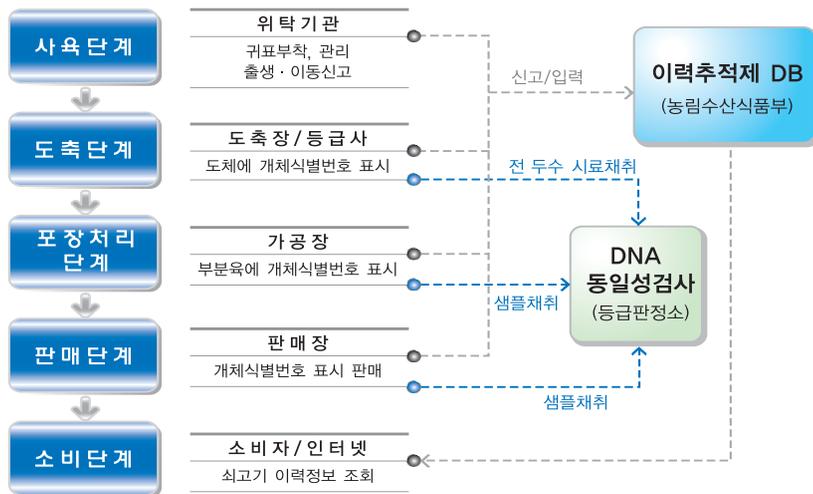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Ⅵ. 소 및 쇠고기 이력제

1. 목적 및 필요성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여 이력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 및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체식별 확인을 위해 도축된 모든 소의 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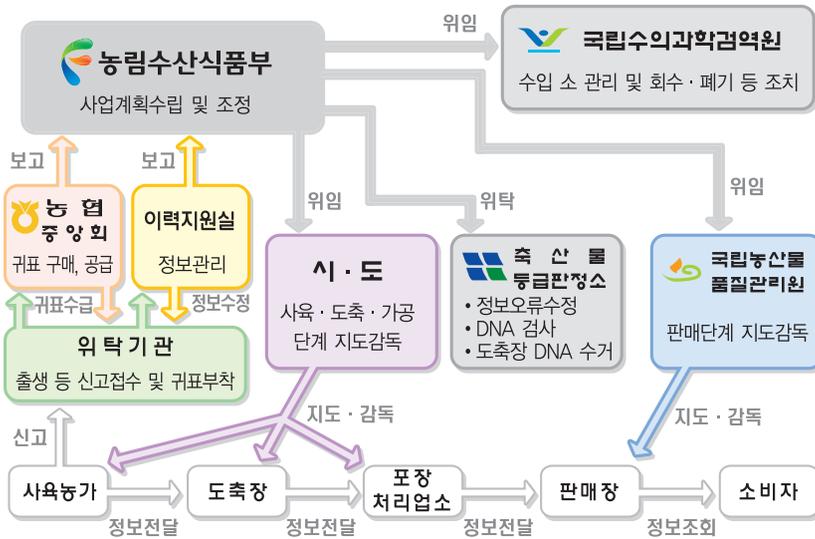


〈쇠고기이력제 사업 추진체계도〉

3.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농림수산물부 동물방역과)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과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 등을 감독하고, 시·도에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단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소 관리 및 회수·폐기 등에 대한 조치를 한다.

또한 시행기관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개체식별대장에 대한 기록·누락 및 오류의 수정 업무 등을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등에 필요한 시료수거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농협중앙회는 귀표구매 및 위탁기관 및 농가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축협 등의 위탁기관에서는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별 역할〉

4. 단계별 추진내용

4.1. 사육단계

□ 법률 주요내용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하였거나, 거래하였거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법 제3조)
- 위탁기관은 소가 출생하여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고한 농가는 귀표를 부착(법 제4조)

□ 사육농가 이력관리 세부요령

-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위탁기관(관할 지역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우뿐만 아니라 젃소, 육우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 질병종류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 방법으로도 가능



사육단계 표시



개체식별번호	000189818526	
도축일자	2008년07월10일	
도축번호	44	
1등급량	451	Kg
도축장명	(주)강원엘씨씨	
www.mrfca.net 성고기이력추적시스템 BEEF TRACEABILITY SYSTEM		

도축단계 표시

- 가축시장에서 소를 사거나 판매한 때에는 위탁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소의 개체식별번호, 성명, 주소 및 상대방 인적사항 등)
-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 전산등록된 소만이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하다.
 - 농가 등에서 자체부착한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귀표는 도축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 미리 신고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함.
-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출하할 경우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가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4.2. 도축단계

□ 법률 주요내용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도축현황과 위생검사·등급 등을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법 제3조, 제13조 등)
-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소 도체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법 제10조)

□ 도축단계 이력관리 세부요령

- 도축 의뢰된 소의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한다.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신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신청서상의 전산입력사항을 날짜별로 기록·보관(2년)
- 검사관은 도체의 위생검사 합격여부를 입력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 도축업자는 도체에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고, 도축결과는 개체식별대장에 전산 입력해야 한다.

4.3. 포장처리단계

□ 법률 주요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쇠고기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법 제11조)
- 쇠고기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포장처리한 경우 그 실적을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보관(법 제3조, 제13조)

□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세부요령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포장육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식육포장 처리한 실적과 거래실적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2년)하여야 한다.
 - 지정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의 포장처리실적을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시스템에 전산신고해야 하는 지정업소〉

- * 도축업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평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당된다.

- 또한 구매자 요구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장처리단계 표시

4.4. 판매단계

□ 법률 주요내용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법 제11조)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

□ 판매단계 이력관리 세부요령

- 판매장 입고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및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판매 표시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보관(1년)하고, 구매자 요구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거래내역서 】

판매 업소 명(○○○정육점)

거래 년월일	식육의 종류	물량 (kg)	원산지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산하증권번호)	매입처 ()
2009.1.5	한우	5.6	국내산	안심	1+	○○○○	000 123 456 789	☆☆ 가공업체
2009.1.5	한우	30.1	국내산	등심	1+	○○○○	000 123 456 789	☆☆ 가공업체
2009.1.5	한우	7.6	국내산	채끝	1+	○○○○	000 123 456 789	☆☆ 가공업체
2009.1.7	육우	3.5	국내산	안창살	2	△△△△	000 123 412 344	◇◇ 가공업체
2009.1.7	육우	56.9	국내산	갈비	2	△△△△	000 123 412 344	◇◇ 가공업체
2009.1.7	육우	3.5	국내산	갈비	2	△△△△	000 123 412 344	◇◇ 가공업체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예)

4.5. 이력정보 공개

4.5.1. 법률 주요내용

- 소비자는 인터넷, 휴대폰 등에 의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조회 가능(법 제9조)
 - 인터넷 : www.mtrace.go.kr
 - 휴대폰 : 6626+무선인터넷버튼+개체식별번호 12자리
 - 제공정보 :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 검사, 가공장 등

4.5.2. 소비자 이력정보 확인방법

• 휴대전화로 이력정보 조회



• 인터넷 · 터치스크린으로 이력정보 조회



5. 단계별 신고기한 및 벌칙

〈단계별 신고 기한〉

단계별	구분	신고기한	비고
사육단계(수입포함)	출생신고	30일 이내	
	양도·양수신고	30일 이내	
	수입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귀표부착	신고 후 30일 이내	
도축단계	도축신고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부득이한 경우 3일
포장처리단계	포장처리실적신고	5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에 한함
판매단계	거래내역서	거래발생일 작성	

〈개체식별대장 및 장부 보관기간〉

단계별	구분	신고 및 보관기간	비고
장부관리	도축신고	2년	부득이한 경우 3일
	포장처리실적	2년	
	포장처리 판매 및 반출실적	2년	
	거래내역서 보존기간	1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함
	육음번호구성내역서 보존기간	2년	
개체식별대장	개체식별대장 보존기간	3년	
	정보공개	3년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위반사항
500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출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의 도축(도축업자), 쇠고기 포장처리(포장처리업자)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도축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도축업자 -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법인포함)도 벌금부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출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Ⅷ. 소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1. 목적 및 필요성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음식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원산지 표시 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 팻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직장의 구내 식당 등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식당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팻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쇠고기 조리음식의 경우 표시방법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등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등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여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예,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구분 기준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육우 : 육용종, 교잡종,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육된 소

3. 사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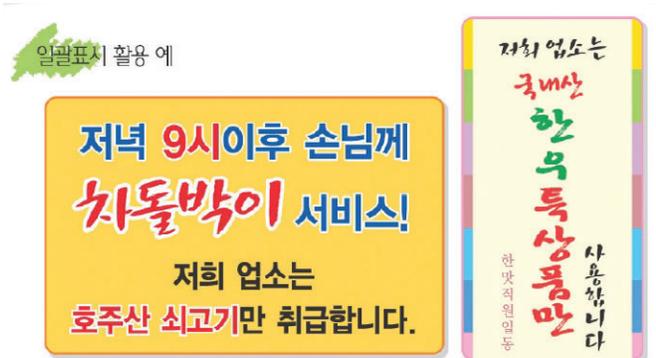


메뉴판 사용 예



게시판 사용 예

○업소 내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 가능
(예,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4. 표시대상 음식점

구분	표시 대상 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료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위탁급식소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업소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참 고 문 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축산물위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업무소개.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http://www.meatacademy.co.kr/>)-HACCP관련자료.
윤충근. 2007. 세계각국의 돼지 사육단계 HACCP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물등급판정소(<http://www.apgs.co.kr/>)-쇠고기이력시스템(www.mtrace.go.kr).